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김윤덕ㆍ이원택ㆍ한병도

문진석 • 이연희 • 한민수

안규백 • 이춘석 • 소병훈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 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도"를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도"를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 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u>「지방자치</u>	1 <u>다음 각</u>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u>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u> 지역	<u>.</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	
<u><신 설></u>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
	<u>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u>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u><신 설></u>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
	<u>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u>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소
	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
	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가목에 해당하
	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	2
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u>특별시·광역</u>
시·특별자치시 및 도(이 <u>하 "시·도"라 한다)</u>에 걸 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도로(이하 "광역도로" 라 한다)

나. 둘 이상의 <u>시·도</u>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 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철도(「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 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 아. (생 략)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 도시권 내 둘 이상의 <u>시·도</u> 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

가 <u>특별시·광역시</u>
·특별자치시·도·특별자
<u>치도(이하 "시·도"라 한</u>
다) 및 도청소재대도시
나 <u>시·도 및 도</u>
청소재대도시
다. ~ 아. (현행과 같음)
3
<u>시</u> ·도
<u>및 도청소재대도시</u>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 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 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_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의 수립)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u>
<u>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u>
지사
② ~ ⑤ (현행과 같음)